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60 호 2016. 6. 2(목)

## 고 시

- 제2016 - 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 1
- 제2016 - 40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 공 고

- 제2016 - 421호 2016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4
- 제2016 - 424호 공인 폐기 공고 ..... 7
- 제2016 - 428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9
- 제2016 - 432호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 ..... 13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	점용·사용 의 면적 ㎡	점용·사용 기 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2016-4	2016. 5.23.	부지진입로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516-1번지선	30.0	2016.5.23. - 2021.5.23. (5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	정○진

남해군 고시 제2016 - 40호

###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2016년 6월 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사업
- 명 칭 : 한려해상 복곡주차장 확장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 적 (㎡)	비 고
신 설	교통시설(주차장)	3,6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421호

2016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지역 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016년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발생 취약지역 내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5. 26. ~ 2016. 6. 16.(21일간)

4. 공 고 방 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5. 설치 예정지

구분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비고
	위 치	세부 장소			
계	4개소		8대		
신설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32-4	2	24시간	
신설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79-2	2	24시간	
신설	남해군 서면	중현리 25-3	2	24시간	
신설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산 187	2	24시간	

※ 설치 여건에 따라 인근 지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남해군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중 택일

다. 제출기한 : 2016년 6월 16일까지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처 : 남해군청 행정과

- 1) 주소 : (우) 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2) 전화 : 055-860-3143
- 3) FAX : 055-860-3737





남해군 공고 제2016 - 424호


### 공인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5일

### 남 해 군 수

- 1. 공인의 폐기 사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폐지
- 2. 폐기일자 : 2016. 5. 25.
- 3. 폐기 공인 내역

공인명	규격	인영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재무관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공인명	규격	인영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분임재무관 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징수관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분임징수관의 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인	1.8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남해군분임 부채관리관인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남해군분임세 입징수관	2.0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남해군 공고 제2016 - 428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가칭)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가칭)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붙임 참조)

2. 출입기간 : 2016. 6. 2. ~ 2016. 8. 30.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용지조서 1부. 끝.

# 남 해 군 공 보

(10) 제 560 호

2016년 6월 2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합 계					30,628	23,560		
1	삼동면 동천리	1094	-	답	1,269	193	최*옥	분할·경계
2	삼동면 동천리	1095	-	답	1,124	308	노*영	분할·경계
3	삼동면 동천리	1096	-	답	777	14	김*윤	분할·경계
4	삼동면 동천리	1097	-	답	1,070	820	김*곤	분할·경계
5	삼동면 동천리	1097	1	답	748	711	김*수	분할·경계
6	삼동면 동천리	1098	-	답	1,798	1,798	김*곤	
7	삼동면 동천리	1099	-	답	1,200	1,200	최*배	
8	삼동면 동천리	1100	-	답	1,021	1,021	최*주	
9	삼동면 동천리	1101	-	답	268	268	최*주	
10	삼동면 동천리	1102	-	답	969	969	홍*순	
11	삼동면 동천리	1103	-	답	813	813	김해김씨*** 동천종중	
12	삼동면 동천리	1104	1	답	1,848	1,848	김*옥	
13	삼동면 동천리	1104	3	답	760	760	김*규	
14	삼동면 동천리	1105	-	답	506	506	최*배	
15	삼동면 동천리	1106	-	답	774	774	김*범	경계
16	삼동면 동천리	1107	-	답	965	965	김*범	경계
17	삼동면 동천리	1108	1	답	1,415	1,415	신*자	
18	삼동면 동천리	1108	2	답	1,408	1,408	신*자	경계
19	삼동면 동천리	1109	1	답	602	602	김*규	
20	삼동면 동천리	1110	1	답	278	278	신*자	

21	삼동면 동천리	1121	1	답	1,322	159	김*대	분할·경계
22	삼동면 동천리	1130	1	답	1,066	841	조*지	분할·경계
23	삼동면 동천리	1130	10	대	73	73	이*자	
24	삼동면 동천리	1131	1	답	925	598	이*자	분할·경계
25	삼동면 동천리	1131	7	대	285	265	이*자	분할·경계
26	삼동면 동천리	1132	3	답	122	36	김*배	분할·경계
27	삼동면 동천리	1133	-	답	473	454	김*배	분할·경계
28	삼동면 동천리	1134	-	답	549	548	김*수	
29	삼동면 동천리	1135	-	답	1,665	1,372	이*택	분할·경계
30	삼동면 동천리	1143	1	답	488	47	이*순	분할·경계
31	삼동면 동천리	1144	2	답	794	590	최*석	분할·경계
32	삼동면 동천리	1145	-	답	1,015	1,015	최*옥	
33	삼동면 동천리	1146	-	답	893	271	이*순	분할·경계
34	삼동면 동천리	2042	3	구	1,345	620	농림축산 식품부	분할·경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합 계					4,373	519		
1	삼동면 동천리	1130	1	답	1,066	37	조*지	분할·경계
2	삼동면 동천리	1130	6	도	23	21	국토교통부	
3	삼동면 동천리	1130	9	도	81	70	국토교통부	
4	삼동면 동천리	1131	1	답	925	81	이*자	분할·경계
5	삼동면 동천리	1131	4	도	190	117	국토교통부	
6	삼동면 동천리	1131	6	도	137	74	국토교통부	
7	삼동면 동천리	1131	7	대	285	1	이*자	분할·경계
8	삼동면 동천리	1132	5	도	159	90	국토교통부	
9	삼동면 동천리	1132	6	도	40	5	국토교통부	
10	삼동면 동천리	1135	1	도	53	10	국토교통부	
11	삼동면 동천리	1136	3	도	69	7	국토교통부	
12	삼동면 동천리	2042	3	구	1,345	6	농림축산 식품부	

남해군 공고 제2016 - 432호

##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 남 해 군 수

가.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나.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별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별첨

라.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마. 공람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바.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조서

####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가. 유통·공급시설

##### 1) 전기공급설비

####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삼동면 봉화리 산308-1	-	증)58,000	58,000	-	농림지역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A	전기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공급설비 신설 A= 58,00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로 결정코자 함</li> </ul>	

##### 나. 교통시설

##### 1) 도로

#### ■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1,790	산366-8 소2-106	산308-1	일반도로	전기공급 설비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소로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3-A 신설</li> <li>- L= 1,790m</li> <li>- B= 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공급설비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를 개설코자 함</li> </ul>	



## 의 건 서

건 명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안요약서]**

**2016. 05**

**남해제1태양광발전소  
남해제2태양광발전소**



## 제1장 사업의 개요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의 변화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태양광발전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시장이며, 국내도 태양광설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 태양광발전사업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대형발전소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P)를 판매하여 수익이 나는 구조로써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국가의 정책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부합하면서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함과 함께 개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하여 조성코자 한다.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 제2호
- 대상계획 범위근거 : 본 계획은 남해군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지구	◦ 면적 : 73,479㎡(전기공급설비 58,000㎡, 진입도로 15,479㎡)	

■ ■ ■ 초안요약서

**1.3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
- 면 적 : 73,479㎡
  - 전기공급설비 : 58,000㎡
  - 진입도로 : 15,479㎡ (L=1,790m, B=4m)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18년

**라. 사업시행자**

- 남해제1태양광발전소, 남해제2태양광발전소

**마. 계획의 주요내용**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전기공급설비 (태양광발전시설)	삼동면 봉화리 산308-1	-	증)58,000	58,000	-	농림 지역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A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신설 A= 58,000㎡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전기 공급설비로 결정코자 함	

초안요약서



2)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1,790	산366-8 소2-106	산308-1	일반도로	전기공급 설비	-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	소로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3-A 신설</li> <li>- L= 1,790m</li> <li>- B= 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급설비 신설에 따른 진입도 로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를 개설 코자 함</li> </ul>	

3) 토지이용계획(전기공급설비)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8,000	100.0	
발전부지	45,189	77.9	
도로	7,276	12.5	
인도	1,030	1.8	
녹지	4,337	7.5	
관리실	70	0.1	
변전실	98	0.2	

초안요약서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초안요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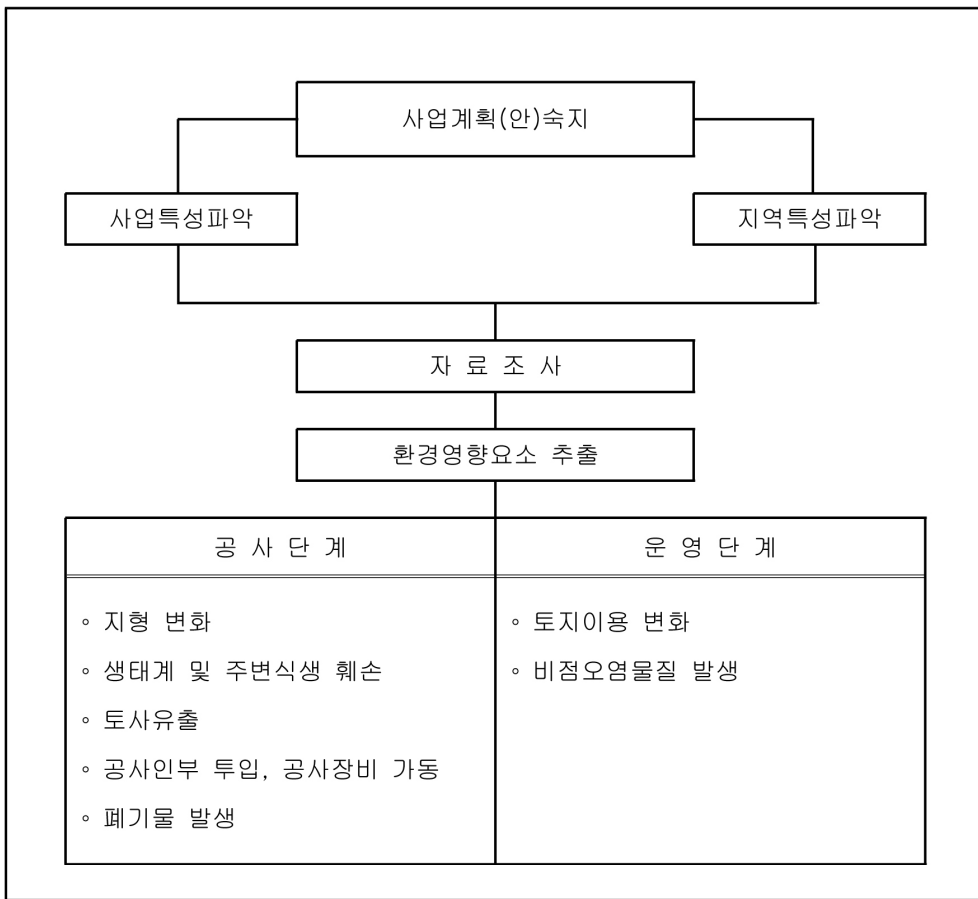
(그림 1-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2.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는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의 부합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인위적인 행위 및 현상을 말하며, 공사시 및 운영시의 전 단계에 걸쳐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계획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그림 2-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 2.2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요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를 비교·평가하여 설정하였으며 <표 2-1>과 같다.

<표 2-1>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구 분		항목	선정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지형의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수질오염물질 발생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기 상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상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토지이용 변화 파악

### 제3장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 요약

#### 3.1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구 분	동·식물상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지정지공사가 진행되면 계획지구에 분포하는 식물군락 및 관목류, 초본류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훼손·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시 사토운반차량, 중장비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은 주변지역의 식생과 식물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일부 서식처 훼손을 초래하고 통행차량의 소음 등에 의하여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의 서식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공사장비의 소음·진동, 차량의 이동 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진입도로부와 인접한 하천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사 유입 등의 교란이 예상되며, 교란발생에 따라 일시적인 종 조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침사지, 오락방지막 등의 저감시설이 요구됨</li> <li>○ 법정보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조사시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수달, 삵, 새호리기, 황조롱이, 큰말뚝가리, 꼬마잠자리 등 총 6종이 확인됨</li> <li>-사업시행으로 인한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의 식물과 식생에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임</li> </ul> </li> <li>○ 육상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주의</li> <li>-공사시 동물 출현에 주의, 위협 및 포획 행위 금지</li> <li>-법정보호종 발견시 적극적인 보존대책 수립</li> </ul> </li> </ul>

#### 3.2 지형 및 생태측 보전

구 분	지형·지질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이며,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토사유출이 예상됨</li> <li>○ 토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토량 : 127,113㎡</li> <li>- 성토량 : 117,231㎡</li> <li>- 사토량 : 9,882㎡</li> </ul> </li> </ul>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변화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지형에 순응하여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li> </ul> </li> <li>○ 사면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사 및 암석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인 성토 사면의 구배를 적용</li> </ul> </li> <li>○ 사면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면부 하단에 석축쌓기 및 보강토옹벽 시공, 사면부에 줄때·평때, 녹생토공법 적용</li> </ul> </li> <li>○ 토사의 유출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li> <li>- 계획지구 경계에 측구를 설치</li> <li>-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li> </ul> </li> </ul>



3.3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경관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능선부는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조망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의 결절점 등으로 선정한 조망점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사업시구가 조망되지 않아 계획 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li> <li>○ 현황조사결과, 진입도로부와 인접한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지형)인 토르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대한 보존할 계획으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가 예상됨</li> </ul>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면보호공법 시행</li> <li>○ 자연지형의 훼손 최소화</li> </ul>

3.4 수환경의 보전

구 분	수질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유출량 : 1.29m<sup>3</sup>/sec</li> <li>- 토사유출량 : 42.44ton/일</li> <li>- SS가중농도 : 381.68mg/L</li> </ul> </li> <li>○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발생 없음</li> </ul> </li> </ul>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사유출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 공사실시, 우기공사 지양</li> <li>· 오탁방지막 설치</li> </ul> </li> <li>-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며, 발생오수는 전량 위탁처리</li> </ul> </li> <li>-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정리정돈 등</li> </ul> </li> </ul> </li> <li>○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li> <li>·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li> </ul> </li> </ul> </li> </ul>

초안요약서

**3.5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구 분	대기질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총 오염물질 배출량</li> <li>- 공사시</li> <li>· PM-10 : 24.2~35.0<math>\mu\text{g}/\text{m}^3</math></li> <li>· NO2 : 7.04~10.65ppb</li> <li>→ 모든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만족(24시간 기준)</li> </ul>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차량속도 20km/hr 이하 규제</li> <li>- 토사 적치시 덮개 및 천막을 이용하여 바람에 의한 먼지의 비산을 방지</li> <li>- 차량운행시 비산먼지 억제</li> <li>-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li> <li>- 풍속이 평균 8m/s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li> <li>- 방진망 설치</li> <li>- 이산화질소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장비 효율적 운용</li> <li>· 청소원 고정배치</li> <li>·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li> </ul> </li> </ul>



3.6 소음·진동기준과의 부합성

구 분	소음·진동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정온시설별 예측소음도</li> </ul>			
	영향지역	예측소음도(dB(A))	규제기준(dB(A))	비고
	봉화마을	45.6	65	만족
	원에예술촌	44.9	65	만족
	독일마을	48.2	65	만족
	물건마을 및 물건중학교	44.5	65	만족
	해오름예술촌	42.5	65	만족
	은점마을	41.8	65	만족
	대지포마을	38.3	65	만족
	삼애자연마을	70.1	65	초과
	축사	57.3	60	만족
	주거지역	52.8	65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온시설별 예측진동도</li> </ul>			
	영향지역	예측진동도(dB(B))	규제기준(dB(B))	비고
봉화마을	22.3	65	만족	
원에예술촌	21.7	65	만족	
독일마을	24.4	65	만족	
물건마을 및 물건중학교	19.8	65	만족	
해오름예술촌	53	65	만족	
은점마을	19.2	65	만족	
대지포마을	16.4	65	만족	
삼애자연마을	42.2	65	만족	
축사	31.8	57	만족	
주거지역	28.1	65	만족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요령 준수</li> <li>-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환경관리가 수반된 작업공정 관리</li> <li>-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li> <li>- 저소음·저진동 공법의 선정 및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정</li> <li>- 효율적 장비투입계획 수립(분산투입)</li> <li>- 가설방음판넬 설치</li> </ul>			

■ ■ ■ 초안요약서

**3.7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구 분	친환경적 자원순환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 4.77kg/일</li> <li>- 분뇨 발생량 : 3.24ℓ/일</li> <li>- 폐유 발생량 : 10.07ℓ/일</li> <li>- 임목폐기물 발생량 : 325.67ton</li> </ul> </li> </ul>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및 분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수거 후 성상별로 위탁처리</li> <li>· 공사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 후 수거된 분뇨는 위탁처리</li> </ul> </li> <li>- 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내 폐유교체 금지, 정비업체 이용</li> <li>· 계획지구 내 발생 폐유는 위탁처리</li> </ul> </li> <li>- 임목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식수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탁처리</li> </ul> </li> </ul> </li> </ul>

**3.8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구 분	토지이용																								
영향예측	○ 토지이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8,000</td> <td>100.0</td> </tr> <tr> <td>발전부지</td> <td>45,189</td> <td>77.9</td> </tr> <tr> <td>도 로</td> <td>7,276</td> <td>12.5</td> </tr> <tr> <td>인 도</td> <td>1,030</td> <td>1.8</td> </tr> <tr> <td>녹 지</td> <td>4,337</td> <td>7.5</td> </tr> <tr> <td>관리실</td> <td>70</td> <td>0.1</td> </tr> <tr> <td>변전실</td> <td>98</td> <td>0.2</td> </tr> </tbody> </table>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8,000	100.0	발전부지	45,189	77.9	도 로	7,276	12.5	인 도	1,030	1.8	녹 지	4,337	7.5	관리실	70	0.1	변전실	98	0.2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8,000	100.0																						
	발전부지	45,189	77.9																						
	도 로	7,276	12.5																						
	인 도	1,030	1.8																						
	녹 지	4,337	7.5																						
관리실	70	0.1																							
변전실	98	0.2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보상함을 원칙으로 할 계획</li> </ul> </li> </ul>																								



## 제 4장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

### 1.4 결론

- 지구온난화 등 기후의 변화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태양광발전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시장이며, 국내도 태양광설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도록 함으로서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 태양광발전사업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대형발전소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P)를 판매하여 수익이 나는 구조로써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국가의 정책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부합하면서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함과 함께 개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하여 조성코자 하며,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단, 부정적인 영향은 공사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공사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저감방안에 의해 감소되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